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0. 3. .
제 출 자 : 이 천 시 장

□ **제안이유**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전실천강령으로 "의제 21"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속적인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의제 21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고자 이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시의 책무와 각종 환경오염유발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대하여 정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나.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변경, 집행할 때에는 시민 및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지방의제 21"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시장은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환경기본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 사업자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 환경보전시책 시행에 따르는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후손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 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책무를 진다.

1. 사업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유발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책무
2.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의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의 책무
3. 시·시민·단체의 환경보전활동 등에 적극적 협조와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책무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의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때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책무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책무
3.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책무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책무

제7조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환경단체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

하여 이천시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변경, 집행할 때에는 시민 및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과 그 예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⑥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은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한 공무원, 시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에게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의 공개)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②시장은 환경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등 종합정보체제의 구성에 노력한다.

③환경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